

2023년 제1회 창원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3년 제1회 창원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3월 6일

창원시의회의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임용 분야	임용 등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정 부서	담당직무 내용
정책 지원관	지방행정 주사보 (일반임기제)	2명	2년 (주40시간)	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조례 제정·개정·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·조사·분석·검토 지원-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-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, 시정질문서, 5분 자유발언 등 작성과 관련된 자료의 취합·분석·검토 지원- 의원의 공청회·토론회·세미나 등 준비·홍보 및 개최 지원- 기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, 제83조와 연관된 의정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지원 (자료 수집·분석·조사·검토지원, 주민·전문가 의견수렴, 보도자료 작성 등)

※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

2. 법령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

3. 응시자격요건

○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
- 지역·성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연령 : 20세 이상(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이 아닌 자)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직무관련 자격요건 :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임용분야	자 격 요 건
정 책 지 원 관	<p>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2.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<p>*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</p>
	<p>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연구소, 대학교(부설 연구기관 포함) 등에서</p> <p>▶ 정책개발 지원, 법제, 법률해석,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·분석·검토 실무경력</p> <p>*공공기관 :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(기획재정부)</p>
	<p>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</p> <p>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</p> <p>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, 반드시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. 다만,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함(예시: 주 20시간 근무) <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></p>

4. 보수수준

○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보수규정 제34조 관련)]

(단위: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일반임기제 7급(상당)	64,776	46,006

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 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
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시험일정(본 일정 및 면접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원서접수 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(예정)	면접시험 시행(예정)		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
		일 시	장 소	
2023. 3. 20.(월) ~ 2023. 3. 22.(수)	2023. 4. 6.(목)	2023. 4. 12.(수) ~ 2023. 4. 19.(수)	의회 3층 소회의실	2023. 4. 24.(월)

- ※ 「면접시험 시행 예정일」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정은 「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계획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기 바람
- ※ 시험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를 하지 않으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창원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council.changwon.go.kr>)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바람

나. 접수방법 :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(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)

- 접수기간 : 2023. 3. 20.(월) ~ 3. 22.(수) / 3일간
- 방문접수 : 0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
- 접수장소 : 창원시의회 3층 의회담당관 총무팀
-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활용

등기우편 접수 안내

- ▶ 주 소 : 우(51435)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, 창원시의회 의회담당관 총무팀
- ▶ 유효 일 :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함
 - ※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접수는 불가
- ▶ 응시수수료 : 우체국 방문 ‘통상환증서(7,000원)’ 를 구입하여 제출서류와 동봉
- ▶ 기타사항
 - 등기우편은 창원시의회 의회담당관 총무팀(☎055-225-5317)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
 -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“정책지원관 응시원서 재증” 글자 표기
 -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다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)
 - ※ 응시자가 많을 경우,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
- 합격자 개별통보 및 창원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council.changwon.go.kr>) 공고

라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검정
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마. 최종합격자 발표

-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창원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council.changwon.go.kr>) 공고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※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임용자격이 부여됨

6. 제출서류 : 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(스테이플러 사용 금지)

제출서류	내 용	비 고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	▶ 목록별로 제출여부 표시	[별지 제1호]
② 응시원서 1부	▶ 응시수수료 : 창원시 수입증지 - 6·7급(나·다급) : 7,000원 ▶ 판매처 : 창원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 ▶ 정부 및 타 지자체 수입증지 적용 불가	[별지 제2호]

제출서류	내 용	비 고
③ 이력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(미첨부 시 불인정) ▶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 	[별지 제3호]
④ 자기소개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4 2매 이내 	[별지 제4호]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4 3매 이내 ▶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, 추진전략,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	[별지 제5호]
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		[별지 제6호]
⑦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		[별지 제7호]
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		[별지 제8호]
⑨ 주민등록초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▶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▶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창원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	
⑩ 최종 학력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▶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 증명서 함께 제출 ▶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	
⑪ 경력(재직)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(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) ▶ <u>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직무 관련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</u> 	

제출서류	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(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) ▶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을 명시하여야 하며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(미제출 시 불인정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 직무분야 증빙이 안 될 경우 [별지 제9호] ‘경력사실 확인 증명서’ 추가 제출 	[별지 제9호]
⑫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발급 ▶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	
⑬ 자격증(또는 면허증) 사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원본 제출한 경우, 희망시 확인 복사 후 반환 ▶ 자격(면허)증 유효기간 : 면접시험일 기준 	해당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함 ※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※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※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,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		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.
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(예: 졸업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 (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)
-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, 학교명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하며,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 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본 공고 내용은 재공고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, 임용 시 연금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)
 - 문의 : 공무원연금공단(☎1588-4321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창원시의회 의회담당관 총무팀(☎055-225-5317)

붙임 : 직무기술서 및 제출서류 서식 각 1부. 끝.